심 사 보 고 서

【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 안 번 호 305

2023. 11. 30. 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11. 10. / 정현미 의원 등 10명

나. 회부일자 : 2023. 11. 13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3. 11. 30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만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남양주시 조례의 관련 내용을 일괄 정비하여 만 나이 사용의 근거 마련과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「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등 16개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개정 (안 제1조~제16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○ 본 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되어「행정기본법」과 「민법」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「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등 남양주시 16개 조례의 나이에 표기된 "만"이란 용어를 삭제하여 일괄 정비하는 안건으로.

○ 시민들이 행정 분야에서 '만 나이' 사용이 원칙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일반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필요 타당한 조례라 여겨집니다.

■ 참고자료 :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

| 순번 | 조례명 | 담당부서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 |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| |
| 2 |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| 기획예산과 |
| 3 | 남양주시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| |
| 4 |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| 자치행정과 |
| 5 |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| 복지정책과 |
| 6 |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| 복지행정과 |
| 7 | 남양주시 놀이체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| |
| 8 | 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| 보육정책과 |
| 9 | 남양주시 영유아보육 조례 | |
| 10 |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| 미래교육과 |
| 11 | 남양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| 월 1년 전 웹 리 |
| 12 |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| 청년정책과 |
| 13 | 남양주시 물맑음수목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| 산림녹지과 |
| 14 | 남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| 보건정책과 |
| 15 |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| 수도과 |
| 16 |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| 하수처리과 |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- 5. 토론요지
 - 없 음
- 6. 심사결과
 - ○「원안가결」
- 7. 소수의견 요지
 - 없 음

붙임: 만나이 정착을 위한 남양주시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1부.